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16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문진석·정성호·서영석

이정문 · 김윤덕 · 이연희

복기왕 • 이재관 • 강훈식

송옥주 • 박지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 출산 직후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90일"을 "180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횟수에 상관 없이"로 한다.

제3장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자녀 출생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출생을 이유로 휴가(이하 "자녀 출생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와 별개로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자녀 출생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자녀 출생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39조제3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자녀의 출생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자녀 출생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	
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	
구하는 경우에 <u>10일</u> 의 휴가를	<u>20일</u>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	3
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	<u>180</u>
<u>일</u> 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u>일</u>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u>1회에</u>	④ <u>횟수에</u>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	<u> 상관 없이</u>
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8조의4(자녀 출생휴가) ① 사
	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출생
	을 이유로 휴가(이하 "자녀 출
	생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
	자 출산휴가와 별개로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제37조(벌칙) ① (생 략)

-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2의2. (생 략) <u><신 설></u>
- 3. ~ 9. (생 략)
- ③ ④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의2. (생략)

<신 설>

②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세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② 사업주는 자녀 출생휴가를	<u>!</u>
는 아니 된다. 에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니	<u> </u>
M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
②	는 아니 된다.	
	세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 여 자녀 출생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를 한 경우 3. ~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2	_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 여 자녀 출생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를 한 경우 3. ~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 여 자녀 출생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를 한 경우 3. ~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 여 자녀 출생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를 한 경우 3. ~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
2의3.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 여 자녀 출생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를 한 경우 3. ~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 자녀 출생휴가를 이유로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3. ~ 9. (현행과 같음)③・④ (현행과 같음)세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③	1. ~ 2의2. (현행과 같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를 한 경우 3. ~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세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2의3.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히	<u>}</u>
를 한 경우 3. ~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세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 자녀 출생휴가를 이유로	!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u>'</u> _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를 한 경우	
세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3. ~ 9. (현행과 같음)	
같음) ③	③・④ (현행과 같음)	
③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고	ŀ
	같음)	
1. ~ 3의2. (현행과 같음)	3	_
1. ~ 3의2. (현행과 같음)		_
1. ~ 3의2. (현행과 같음)		_
3의3.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히	<u> </u>

여 근로자가 자녀의 출생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
	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
	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